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17년 9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7.4% 증가(전월대비 0.9%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광공업의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7.4% 증가함.
- 전월대비 건설업은 감소했으나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증가해 소폭 상승함.
-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27.1%), 기계장비(19.0%), 전자부품(16.6%) 등에서 증가했으나 기타운송장비(-19.9%), 석유정제(-3.6%), 통신·방송장비(-11.0%) 등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8.7% 상승함(전월대비 0.3%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전문·과학·기술(-0.6%)에서 감소하였으나, 도소매(6.6%), 금융·보험(6.8%), 보건·사회복지(10.4%), 운수(6.5%), 부동산·임대(8.2%) 등이 늘어 5.4% 증가함(전월대비 1.3% 증가).

◆ 2017년 9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8.3% 증가,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25.2%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20.8%), 화장품 등 비내구재(4.3%), 의복 등 준내구재(2.3%)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8.3% 증가함(전월대비 3.1% 증가).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0.3%)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11.5%) 투자가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25.2% 증가함(전월대비 5.5%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전년동월대비 16.1%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공장·창고, 사무실·

점포 등 건축(2.0%)에서 증가하였으나, 철도·궤도, 항만·공항 등 토목(-14.7%)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0.8% 감소.

◆ 2017년 9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선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1%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 2017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8%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0% 상승)

- 2017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3.40(2015년=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1.8% 상승함(전월대비 0.2% 하락).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안은 전월대비)

		연간			분기									월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2016		2017
					4/4	1/4	2/4	3/4	4/4	1/4	2/4	3/4p	9월	8월p	9월p	
생산	전산업	1.4	1.9	3.0	2.7	2.1	3.2	3.0	3.5	3.9	2.7	3.9	1.3	2.5(-0.1)	7.4(0.9)	
	광공업	0.2	-0.3	1.0	0.4	-0.3	0.7	0.5	2.8	3.7	0.5	3.5	-2.0	2.3(0.1)	8.4(0.1)	
	제조업	0.3	-0.3	1.0	0.6	-0.5	0.9	0.6	2.9	3.8	0.4	3.5	-2.0	2.5(0.3)	8.7(0.3)	
	건설업	-0.7	5.0	15.4	10.7	13.2	15.8	14.5	17.7	17.9	13.6	12.5	8.7	8.3(-1.7)	16.1(-2.2)	
	서비스업	2.3	2.9	3.0	3.3	2.8	3.5	3.6	2.1	2.6	2.3	3.2	2.9	2.1(0.1)	5.4(1.3)	
소비	소비재 판매	2.0	4.1	4.3	6.3	5.0	5.9	3.5	2.5	1.9	1.7	4.3	0.2	0.9(-0.9)	8.3(3.1)	
투자	설비투자	5.2	6.9	-1.3	2.0	-7.6	0.6	-4.7	5.9	18.1	17.7	20.7	-4.0	12.5(-0.7)	25.2(5.5)	
물가		1.3	0.7	1.0	0.9	0.9	0.8	0.7	1.5	2.1	1.9	2.3	1.5	2.1(0.1)	1.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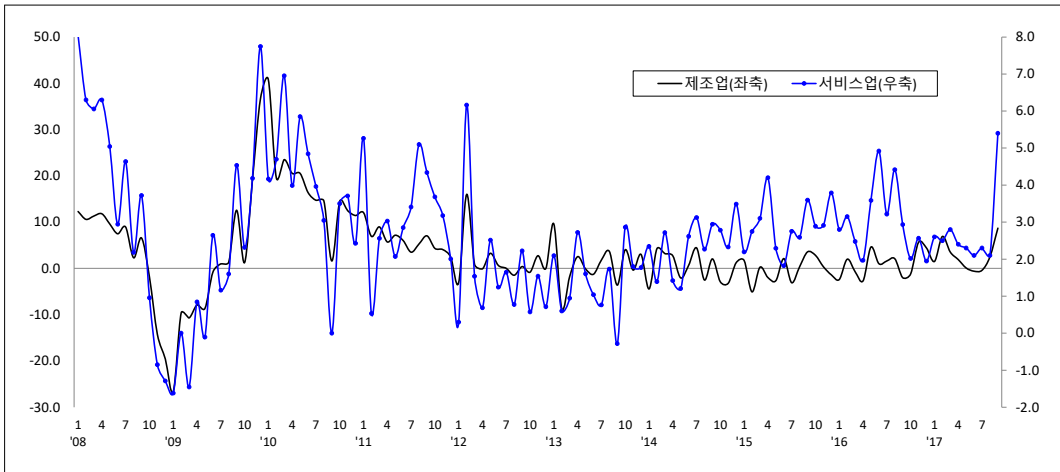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가스업(D)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 3) 전산업의 2016년 및 분기지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은 2016년 9월, 2017년 8월과 9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 안은 전월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교통(3.6%), 음식·숙박(2.5%), 주택·수도·전기·연료(1.8%), 식료품·비주류음료(1.7%) 등 12개 부문 모두 상승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1.9%), 식품 이외(2.0%) 모두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함(전월대비 -0.5% 하락).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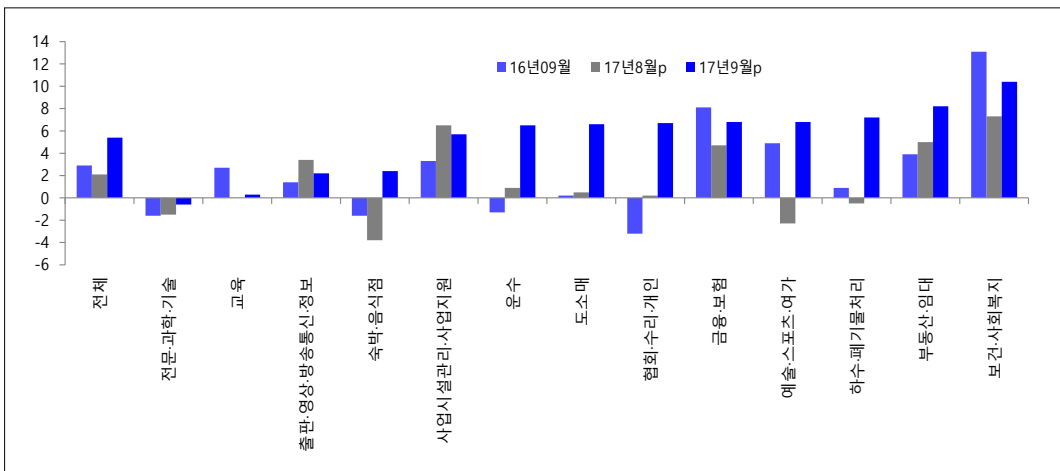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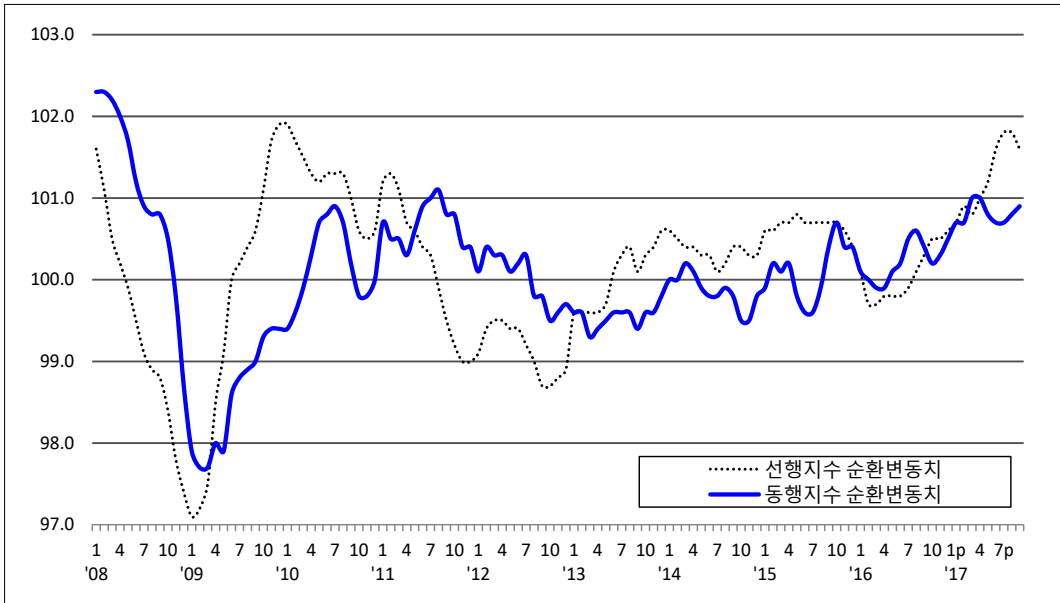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정성미,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고용 동향

◆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증가폭 확대

- 2017년 10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7,75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2천 명(0.9%) 증가함.
 - 취업자는 26,855천 명으로 279천 명 증가하였고, 성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는 230천 명 증가하여 남성 취업자 증가 49천 명보다 약 4배 많음.
 - 실업자는 27천 명 감소한 896천 명으로 실업률은 3.2%(0.2%p 감소), 남성 실업자(548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15천 명 증가하여 실업률은 3.4%(전년동월대비 동일) 기록했고 여성 실업자(348천 명)는 42천 명 감소하여 2.9%(0.4%p 감소)
- 2017년 10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9%)은 0.3%p 감소하였고, 여성(53.1%)은 0.5%p 상승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10월 중 고용률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
 - 여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를 보였는데 여성 고용률은 0.7%p 증가한 51.6%를 기록했고, 남성 고용률은 0.3%p 감소한 71.4%를 기록함.
 - 15~64세 고용률은 0.4%p 상승한 66.9%를 기록하여 15세 이상 고용률에 비해 5.6%p 높게 나타남(그림 1 오른쪽 참조).
 - 15~64세 남성 고용률은 0.1%p 감소한 76.3%를 기록하였고 여성은 0.9%p 상승한 57.4%를 기록함.
- 2017년 10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07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천 명 증가함.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육아’와 ‘가사’는 170천 명 감소하였고 ‘재학’과 ‘통학’은 103천 명 감소한 가운데 ‘쉬었음’이 228천 명 증가하여(그림 2 오른쪽)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
 -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취업준비’ 사유는 2017년 10월 30천 명 증가하였고 ‘연로’에서는 77천 명 증가함.

〈표 1〉 주요 고용지표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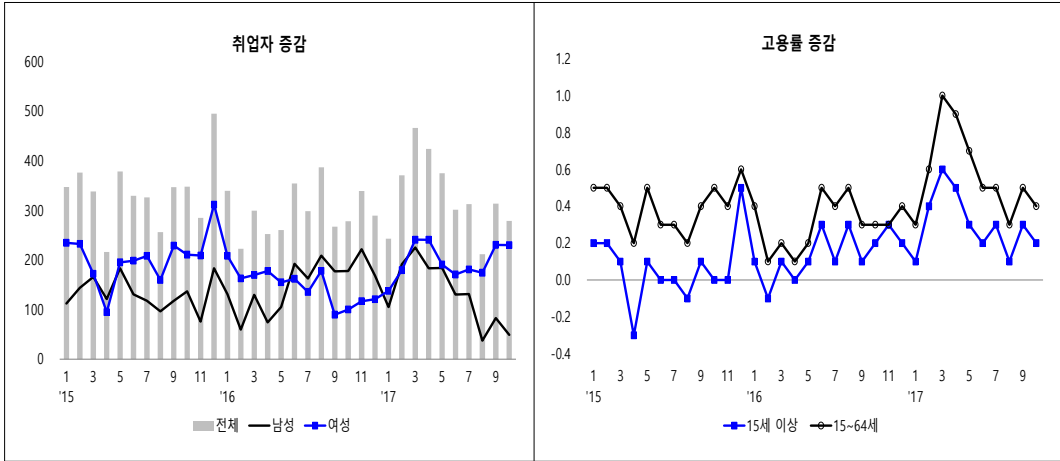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10월	10월	8월	9월	10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2,513	43,017	43,416	43,150	43,512	43,792	43,805	43,828
	(증가율)	(1.0)	(1.2)	(0.9)	(1.2)	(0.8)	(0.8)	(0.7)	(0.7)
	경제활동인구	26,536	26,913	27,247	27,137	27,499	27,740	27,779	27,751
	(증가율)	(2.6)	(1.4)	(1.2)	(1.2)	(1.3)	(0.8)	(1.0)	(0.9)
	취업자	25,599	25,936	26,235	26,298	26,577	26,740	26,844	26,855
	(증가율)	(2.1)	(1.3)	(1.2)	(1.3)	(1.1)	(0.8)	(1.2)	(1.0)
	증가수	533	337	299	348	278	212	314	279
	남성	(266)	(132)	(151)	(137)	(178)	(38)	(83)	(49)
	여성	(267)	(205)	(148)	(211)	(100)	(174)	(231)	(230)
	참가율	62.4	62.6	62.8	62.9	63.2	63.3	63.4	63.3
	남성	(74.0)	(73.8)	(73.9)	(73.9)	(74.2)	(74.1)	(74.1)	(73.9)
	여성	(51.3)	(51.8)	(52.1)	(52.4)	(52.6)	(53.0)	(53.1)	(53.1)
	고용률	60.2	60.3	60.4	60.9	61.1	61.1	61.3	61.3
	남성	(71.4)	(71.1)	(71.1)	(71.5)	(71.7)	(71.2)	(71.4)	(71.4)
	여성	(49.5)	(49.9)	(50.2)	(50.8)	(50.9)	(51.3)	(51.6)	(51.6)
실업자	937	976	1,012	839	923	1,001	935	896	
실업률	3.5	3.6	3.7	3.1	3.4	3.6	3.4	3.2	
남성	(3.6)	(3.7)	(3.8)	(3.2)	(3.4)	(3.8)	(3.7)	(3.4)	
여성	(3.5)	(3.6)	(3.6)	(3.0)	(3.3)	(3.3)	(3.0)	(2.9)	
비경제활동인구	15,977	16,105	16,169	16,012	16,013	16,052	16,026	16,076	
(증가율)	(-1.5)	(0.8)	(0.4)	(1.1)	(0.0)	(0.7)	(0.3)	(0.4)	
15~64세	참가율	67.8	68.3	68.7	68.5	68.9	69.4	69.4	69.3
	남성	(78.6)	(78.6)	(78.9)	(78.6)	(79.1)	(79.3)	(79.4)	(79.1)
	여성	(57.0)	(57.9)	(58.4)	(58.2)	(58.6)	(59.2)	(59.2)	(59.3)
	고용률	65.3	65.7	66.1	66.2	66.5	66.7	66.9	66.9
	남성	(75.7)	(75.7)	(75.8)	(76.0)	(76.4)	(76.2)	(76.3)	(76.3)
여성	(54.9)	(55.7)	(56.2)	(56.3)	(56.5)	(57.1)	(57.3)	(57.4)	

주 :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7. 11), 『2017년 10월 고용동향』.

[그림 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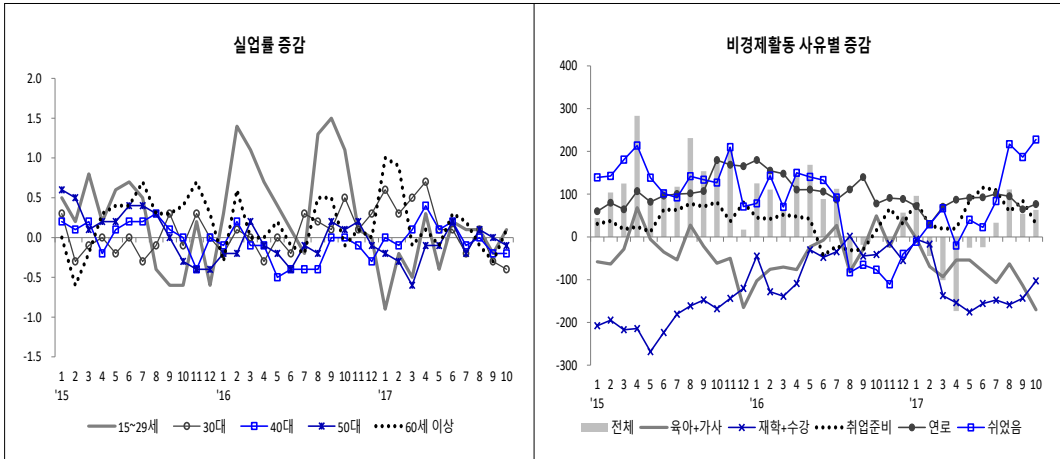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주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과 입학학원, 진학준비를 포함하고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KOSIS.

◆ 5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 증가 지속

- 2017년 10월 중 연령별 취업자는 20대(42천 명, 1.1%)와 40대(68천 명, 0.7%)에서 감소가 지속 중인 가운데 60세 이상(252천 명, 6.1%), 50~59세(107천 명, 1.7%), 30대(18천 명, 0.3%)에서 증가함.

- 2017년 1월 이후 50대에서 10만 명 이상, 60대에서 2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지속 중임(그림 3 참조).
- 20대 후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4천 명 증가했으나 20대 초반에서 취업자가 76천 명 감소하여 20대 취업자는 감소함.
- 30대 초반은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지속 중인 가운데 30대 후반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어 30대 취업자는 2017년 10월 전년동월대비 18천 명 증가로 전환됨.

〈표 2〉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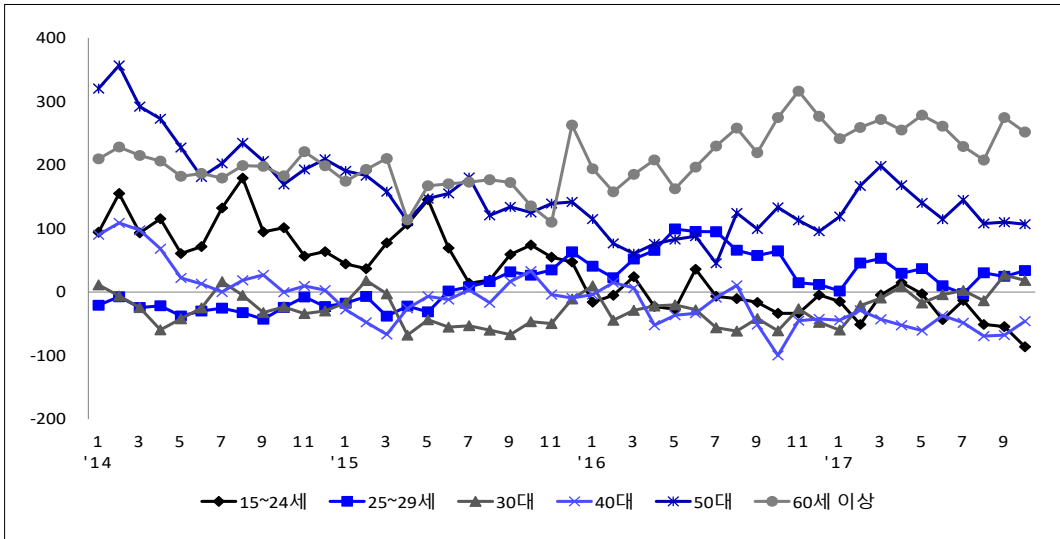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10월	10월	8월	9월	10월
전 체	25,599 (2.1)	25,936 (1.3)	26,235 (1.2)	26,298 (1.3)	26,577 (1.1)	26,740 (0.8)	26,844 (1.2)	26,855 (1.0)
15~19세	244 (9.1)	245 (0.1)	240 (-2.0)	220 (2.7)	211 (-4.3)	254 (-7.0)	232 (5.6)	201 (-4.8)
20~29세	3,625 (1.6)	3,693 (1.9)	3,746 (1.4)	3,731 (2.6)	3,771 (1.1)	3,771 (-0.0)	3,735 (-1.1)	3,729 (-1.1)
20~24세	1,359 (6.4)	1,422 (4.6)	1,417 (-0.3)	1,442 (5.0)	1,417 (-1.7)	1,406 (-2.2)	1,361 (-4.7)	1,342 (-5.3)
25~29세	2,266 (-1.1)	2,272 (0.2)	2,329 (2.5)	2,289 (1.2)	2,354 (2.8)	2,365 (1.3)	2,374 (1.0)	2,387 (1.4)
30~39세	5,714 (-0.4)	5,676 (-0.7)	5,640 (-0.6)	5,676 (-0.8)	5,615 (-1.1)	5,599 (-0.2)	5,656 (0.5)	5,633 (0.3)
30~34세	2,908 (0.4)	2,863 (-1.5)	2,726 (-4.8)	2,851 (-2.4)	2,672 (-6.3)	2,596 (-3.7)	2,611 (-3.0)	2,591 (-3.0)
35~39세	2,806 (-1.2)	2,813 (0.2)	2,914 (3.6)	2,825 (0.8)	2,943 (4.2)	3,003 (3.0)	3,045 (3.7)	3,042 (3.4)
40~49세	6,682 (0.6)	6,668 (-0.2)	6,640 (-0.4)	6,744 (0.5)	6,644 (-1.5)	6,592 (-1.0)	6,588 (-1.0)	6,598 (-0.7)
50~59세	5,845 (4.3)	5,994 (2.5)	6,086 (1.5)	6,062 (2.1)	6,195 (2.2)	6,233 (1.8)	6,258 (1.8)	6,302 (1.7)
60세 이상	3,489 (6.1)	3,661 (4.9)	3,884 (6.1)	3,867 (3.6)	4,141 (7.1)	4,291 (5.1)	4,375 (6.7)	4,393 (6.1)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7. 11), 『2017년 10월 고용동향』.

[그림 3]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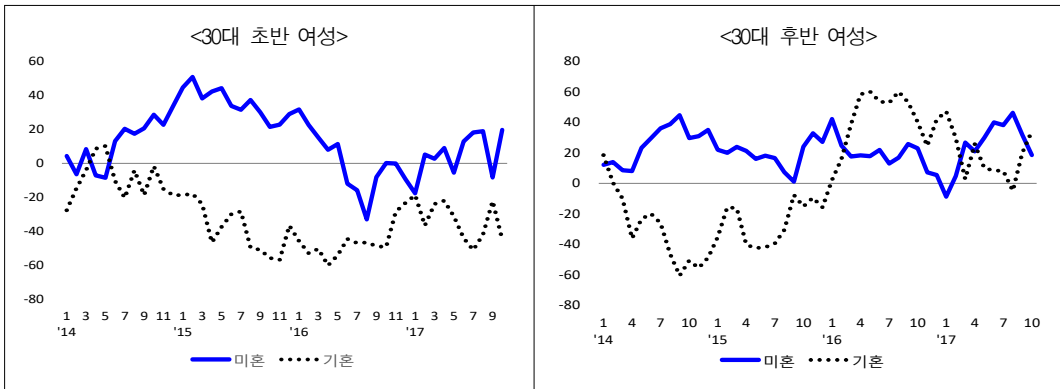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4]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임금근로자 증가 및 비임금근로자 감소

- 2017년 10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9,94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8천 명(1.3%) 증가했고, 비임금근로자는 6,91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천 명(0.3%) 증가함.
- － 2017년 10월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115천 명 감소하여 1년 연속 10만 명 이상 감소했고 임금근로자 증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반면 상용근로자는

356천 명 증가해 임금근로자를 지지 중임(그림 5 왼쪽).

- 한편 무급가족종사자는 2016년 10월 대비 22천 명 감소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3천 명 증가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0천 명 증가하여 비임금근로자는 증가함(그림 5 오른쪽).

〈표 3〉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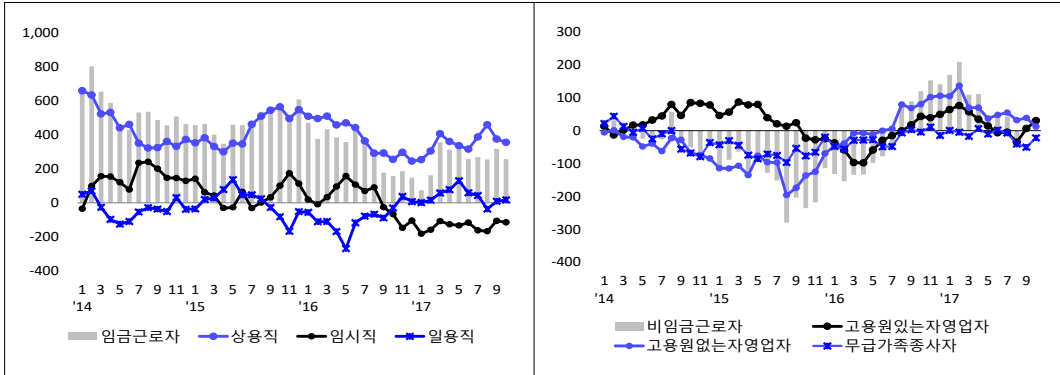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10월	10월	8월	9월	10월
전 체	25,599 (2.1)	25,936 (1.3)	26,235 (1.2)	26,298 (1.3)	26,577 (1.1)	26,740 (0.8)	26,844 (1.2)	26,855 (1.0)
비임금근로자	6,857 (-0.2)	6,706 (-2.2)	6,689 (-0.3)	6,770 (-3.4)	6,890 (1.8)	6,857 (-0.6)	6,880 (-0.1)	6,910 (0.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50 (2.7)	1,581 (2.0)	1,561 (-1.3)	1,560 (-1.4)	1,603 (2.8)	1,559 (-2.2)	1,603 (0.4)	1,634 (1.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102 (-0.9)	3,982 (-2.9)	4,009 (0.7)	4,011 (-3.3)	4,092 (2.0)	4,137 (0.8)	4,122 (1.0)	4,104 (0.3)
무급가족종사자	1,205 (-1.3)	1,144 (-5.1)	1,119 (-2.2)	1,199 (-6.0)	1,195 (-0.3)	1,160 (-3.4)	1,156 (-4.2)	1,173 (-1.8)
임금근로자	18,743 (3.0)	19,230 (2.6)	19,546 (1.6)	19,529 (3.1)	19,687 (0.8)	19,883 (1.3)	19,964 (1.6)	19,945 (1.3)
상용근로자	12,156 (3.8)	12,588 (3.6)	12,974 (3.1)	12,801 (4.6)	13,057 (2.0)	13,426 (3.5)	13,426 (2.9)	13,412 (2.7)
임시근로자	5,032 (2.9)	5,086 (1.1)	5,104 (0.4)	5,208 (2.0)	5,141 (-1.3)	5,029 (-3.2)	5,038 (-2.1)	5,026 (-2.2)
일용근로자	1,555 (-2.2)	1,556 (0.1)	1,469 (-5.6)	1,520 (-5.1)	1,490 (-2.0)	1,428 (-2.5)	1,501 (3.4)	1,507 (1.1)
1~17시간	1,177 (0.5)	1,222 (3.9)	1,273 (4.1)	1,189 (8.9)	1,262 (6.1)	1,575 (3.6)	1,352 (10.2)	1,311 (4.0)
18~35시간	2,792 (-21.2)	2,776 (-0.6)	3,206 (15.5)	2,414 (0.3)	2,509 (3.9)	6,799 (-2.3)	2,719 (5.5)	2,531 (0.9)
36시간 이상	21,220 (6.4)	21,535 (1.5)	21,346 (-0.9)	22,393 (1.3)	22,487 (0.4)	17,751 (2.2)	22,468 (0.4)	22,710 (1.0)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8	43.6	43.0	44.1	43.6	39.7	42.9	43.2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7. 11), 『2017년 10월 고용동향』.

[그림 5]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건설업과 보건복지 중심의 취업자 증가

- 건설업 취업자가 일시적인 둔화국면을 완전히 벗어나 종전의 증가폭을 회복한 가운데, 건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 취업자 증가가 특징적임.
 - 2017년 10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건설업 취업자 118천 명 증가하면서 상반기의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고 있으나 관련 산업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취업자 증가가 둔화되어 10월 18천 명 증가를 기록함.
 -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은 건조한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0월 68천 명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공공행정 부분 취업자가 지난달에 이어 크게 늘어 10월 84천 명 증가했는데, 60대 이상 임시직 증가(35천 명)가 특징적임.
 - 숙박 및 음식점업(22천 명 감소)은 6월 감소 전환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도소매업은 지난달과 같은 48천 명 취업자 증가함.
 - 제조업이 더딘 속도로 고용 회복세(28천 명)를 보임과 동시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폭(10월 17천 명 감소)이 줄어들었음.
 -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은 이번 달 감소 전환(-27천 명)하였는데 이 산업에 청소 및 경비, 고용알선관련 인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관련 직종의 고용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풀이됨.

〈표 4〉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10월	10월	8월	9월	10월
전 산업	25,599 (2.1)	25,936 (1.3)	26,235 (1.2)	26,298 (1.3)	26,577 (1.1)	26,740 (0.8)	26,844 (1.2)	26,855 (1.0)
농림어업	1,452 (-4.5)	1,345 (-7.4)	1,286 (-4.4)	1,484 (-7.7)	1,438 (-3.1)	1,434 (1.3)	1,452 (2.1)	1,454 (1.2)
광업	13 (-15.8)	14 (2.0)	19 (38.6)	15 (57.3)	20 (34.3)	24 (28.4)	24 (25.9)	23 (12.4)
제조업	4,330 (3.5)	4,486 (3.6)	4,481 (-0.1)	4,552 (4.4)	4,437 (-2.5)	4,442 (0.6)	4,456 (0.4)	4,465 (0.6)
전기·가스·증기·수도	83 (-8.3)	93 (12.1)	89 (-3.8)	97 (11.9)	81 (-16.2)	84 (-5.5)	87 (-0.7)	87 (6.6)
하수, 원료재생·복원	87 (20.1)	88 (1.0)	96 (9.0)	86 (-2.5)	99 (15.1)	93 (-4.5)	92 (-9.7)	93 (-5.8)
건설업	1,796 (2.4)	1,823 (1.5)	1,845 (1.2)	1,824 (-1.5)	1,883 (3.3)	1,925 (1.8)	1,987 (5.8)	2,002 (6.3)
도매 및 소매업	3,792 (3.6)	3,783 (-0.2)	3,729 (-1.4)	3,724 (-2.4)	3,729 (0.1)	3,787 (0.7)	3,797 (1.3)	3,777 (1.3)
운수업	1,407 (-0.5)	1,409 (0.2)	1,412 (0.2)	1,411 (1.2)	1,401 (-0.7)	1,382 (-1.0)	1,389 (-0.7)	1,393 (-0.6)
숙박 및 음식점업	2,098 (6.4)	2,179 (3.9)	2,277 (4.5)	2,195 (2.3)	2,301 (4.8)	2,301 (-1.7)	2,294 (-0.5)	2,279 (-1.0)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714 (3.1)	772 (8.1)	786 (1.8)	781 (11.2)	793 (1.5)	792 (-1.4)	779 (-1.7)	777 (-2.0)
금융 및 보험업	837 (-3.0)	789 (-5.8)	797 (0.9)	790 (-3.3)	807 (2.3)	784 (-2.4)	788 (-2.4)	791 (-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8 (4.6)	535 (5.3)	570 (6.7)	550 (4.9)	584 (6.2)	621 (6.7)	611 (5.7)	602 (3.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025 (0.3)	1,048 (2.3)	1,102 (5.2)	1,056 (2.7)	1,107 (4.9)	1,067 (-3.1)	1,060 (-4.0)	1,090 (-1.5)
사업서비스	1,180 (0.6)	1,249 (5.8)	1,293 (3.5)	1,283 (8.8)	1,318 (2.7)	1,315 (1.6)	1,315 (0.9)	1,291 (-2.0)
공공행정 등	957 (-0.8)	936 (-2.2)	993 (6.1)	962 (1.1)	1,020 (6.1)	1,090 (7.4)	1,102 (9.8)	1,104 (8.2)
교육서비스업	1,807 (3.4)	1,818 (0.6)	1,846 (1.5)	1,871 (2.3)	1,863 (-0.4)	1,883 (2.0)	1,854 (-0.9)	1,868 (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1,693 (8.9)	1,770 (4.5)	1,851 (4.6)	1,822 (3.5)	1,913 (5.0)	1,935 (2.5)	1,967 (3.3)	1,982 (3.6)
예술·스포츠·여가	394 (0.3)	424 (7.9)	406 (-4.3)	427 (4.5)	423 (-1.0)	426 (5.9)	422 (4.7)	431 (1.9)
협회·단체·수리·기타	1,299 (-1.0)	1,277 (-1.7)	1,272 (-0.4)	1,279 (0.4)	1,280 (0.1)	1,284 (-0.7)	1,296 (1.1)	1,276 (-0.3)
가구내 및 자가	116 (-32.5)	82 (-29.0)	69 (-15.5)	71 (-30.9)	64 (-9.5)	60 (-4.9)	60 (-10.5)	59 (-8.7)
국제 및 외국기관	14 (91.9)	18 (29.4)	16 (-11.5)	20 (24.8)	14 (-31.5)	14 (-19.1)	13 (-8.8)	12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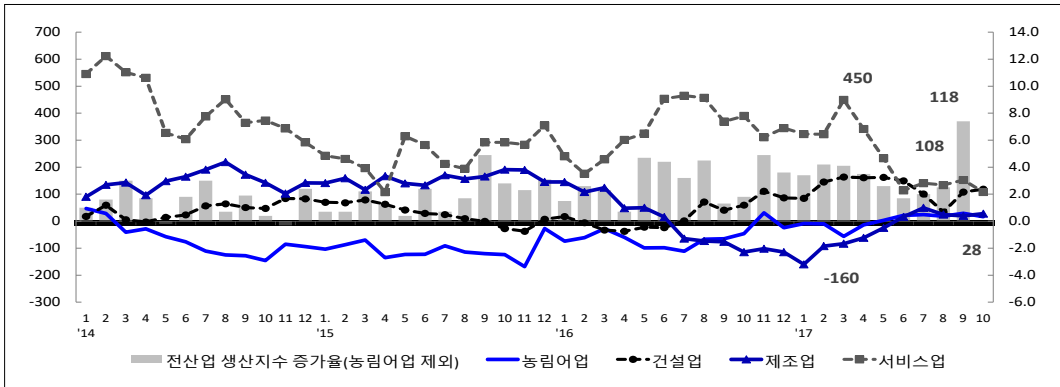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 통계청(2017. 11), 『2017년 10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감(좌축) · 전산업 생산지수 증가율(우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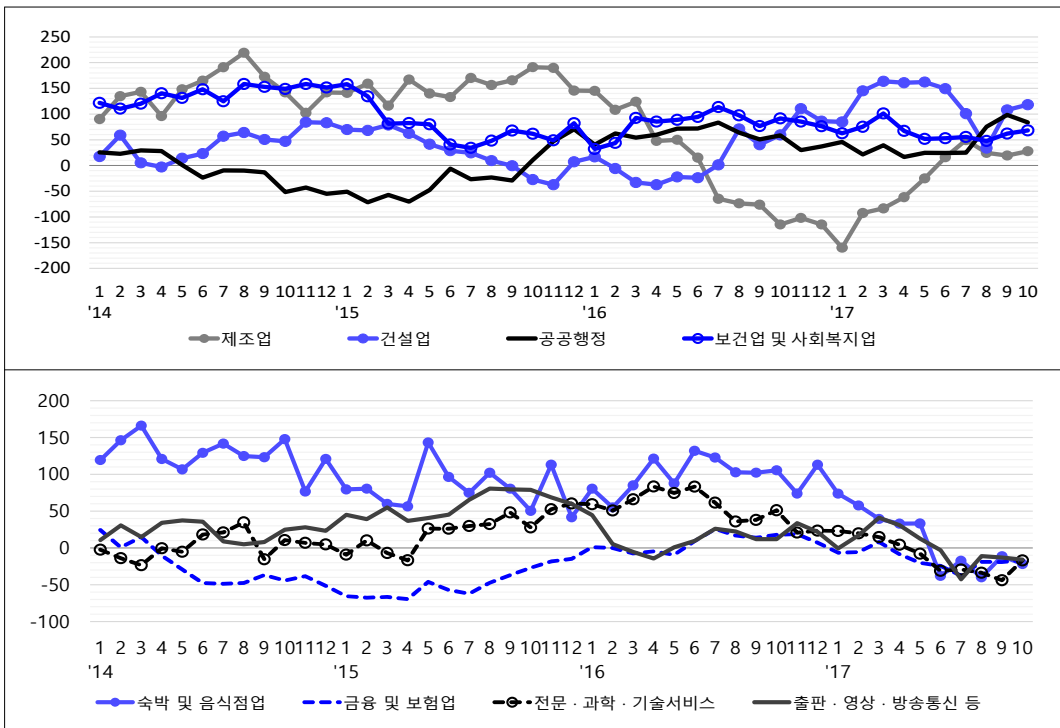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전산업생산지수」, KOSIS.

[그림 7]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김종욱, 동향분석실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7년 8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 2017년 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77천 원(1.3% ↑)임.
 - 2017년 8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한 3,550천 원이었으며,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4.3% 상승한 1,550천 원임.
 - 상용근로자의 전년동월대비 저조한 임금상승은 정액급여 증가폭 둔화와 특별급여의 감소에서 기인함.
 - 추석명절상여금이 2016년에는 8월에 일부 지급되었으나 2017년에는 8월에 지급되지 않아 특별급여가 전년동월대비 감소(13.2% ↓)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7년 8월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3% 하락함.
 - 2017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폭의 확대와 명목임금상승폭의 둔화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1.3% 하락함.
 - 2016년 8월 0.5%이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7년 8월 2.6%로 상승하면서 실질임금상승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2017년 1~8월 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2.8%, 0.7% 상승에 그쳐 상승폭 둔화

- 특히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4.0% → 2.4%)이 크게 둔화함.
 - 이는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증가율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에 기인함.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4.9%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됨.

〈표 1〉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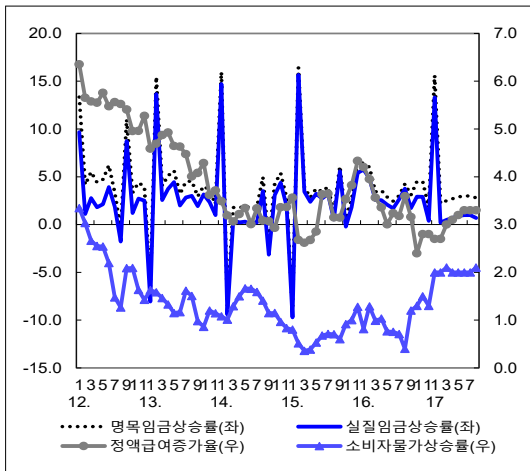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1~8월 평균	8월	1~8월 평균	8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111 (3.9)	3,190 (2.5)	3,300 (3.5)	3,425 (3.8)	3,375 (4.0)	3,334 (4.3)	3,470 (2.8)	3,377 (1.3)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299 (3.8)	3,378 (2.4)	3,490 (3.3)	3,623 (3.8)	3,565 (4.0)	3,650 (2.4)	3,550 (0.9)	
	정액급여	2,578 (4.4)	2,660 (3.2)	2,749 (3.3)	2,838 (3.3)	2,825 (3.5)	2,827 (3.6)	2,917 (3.2)	
	초과급여	184 (1.7)	201 (9.3)	216 (7.4)	225 (3.8)	223 (3.4)	216 (0.0)	226 (1.2)	220 (1.8)
	특별급여	537 (1.8)	516 (-3.7)	525 (1.6)	560 (6.7)	517 (7.4)	476 (12.3)	508 (-1.8)	413 (-13.2)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77 (6.5)	1,387 (0.7)	1,424 (2.7)	1,469 (3.1)	1,455 (2.7)	1,486 (3.9)	1,527 (4.9)	1,550 (4.3)	
소비자물가지수	107.8 (1.2)	109 (1.3)	109.8 (0.7)	101.6 (1.0)	100.7 (0.7)	100.9 (0.5)	102.8 (2.1)	103.5 (2.6)	
실질임금증가율	2.5	1.2	2.7	2.8	3.2	3.8	0.7	-1.3	

-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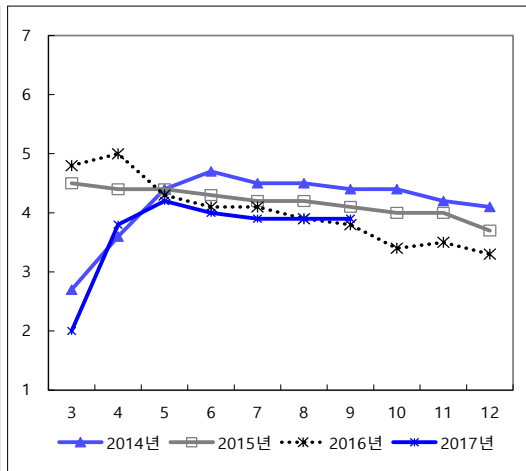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5=100.0)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월)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7년 9월 협약임금 인상률 3.9%

- 2017년 9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2017년 9월 현재 임금결정 진도율은 48.8%로 전년동월대비 부진함.

◆ 2017년 8월 중소기업의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폭이 크게 둔화

- 2017년 8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8%, 1.6% 상승에 그침.
-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총액은 3,04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으며, 이는 특별급여의 감소(-20.7%)에서 비롯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4,82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1%대의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기록함.

◆ 2017년 1~8월 평균 중소기업의 임금상승률은 확대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둔화

- 2017년 1~8월 평균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4,941천 원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0% 상승에 그친 가운데 중소기업의 임금은 3,126천 원으로 전년동평균대비 4.1% 상승함.

〈표 2〉 사업체규모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	2016	2017			
				1~8월 평균	8월	1~8월 평균	8월
중소 규모	소 계	2,938 (3.6)	3,048 (3.7)	3,003 (3.8)	2,989 (5.0)	3,126 (4.1)	3,044 (1.8)
	상용임금총액	3,110 (3.4)	3,228 (3.8)	3,178 (3.9)	3,167 (5.3)	3,294 (3.6)	3,210 (1.3)
	정액급여	2,577 (2.9)	2,660 (3.2)	2,648 (3.2)	2,653 (3.8)	2,756 (4.1)	2,757 (3.9)
	초과급여	184 (6.6)	197 (7.3)	195 (7.0)	194 (5.3)	202 (3.4)	198 (2.3)
	특별급여	349 (5.3)	371 (6.1)	334 (7.1)	321 (19.4)	335 (0.3)	255 (-20.7)
	비상용임금총액	1,434 (3.2)	1,486 (3.6)	1,466 (3.4)	1,482 (4.4)	1,536 (4.8)	1,540 (3.9)
대규모	소 계	4,849 (3.7)	4,959 (2.3)	4,887 (2.3)	4,755 (1.3)	4,941 (1.1)	4,829 (1.6)
	상용임금총액	5,017 (3.9)	5,131 (2.3)	5,041 (2.4)	4,863 (1.4)	5,089 (0.9)	4,928 (1.3)
	정액급여	3,438 (5.1)	3,519 (2.3)	3,497 (2.9)	3,493 (2.2)	3,563 (1.9)	3,564 (2.0)
	초과급여	349 (10.4)	331 (-5.2)	329 (-6.4)	301 (-12.1)	322 (-2.1)	308 (2.3)
	특별급여	1,230 (-0.7)	1,281 (4.2)	1,214 (3.5)	1,069 (3.1)	1,203 (-0.9)	1,056 (-1.2)
	비상용임금총액	1,329 (-1.8)	1,311 (-1.4)	1,340 (-3.6)	1,542 (2.0)	1,428 (6.6)	1,695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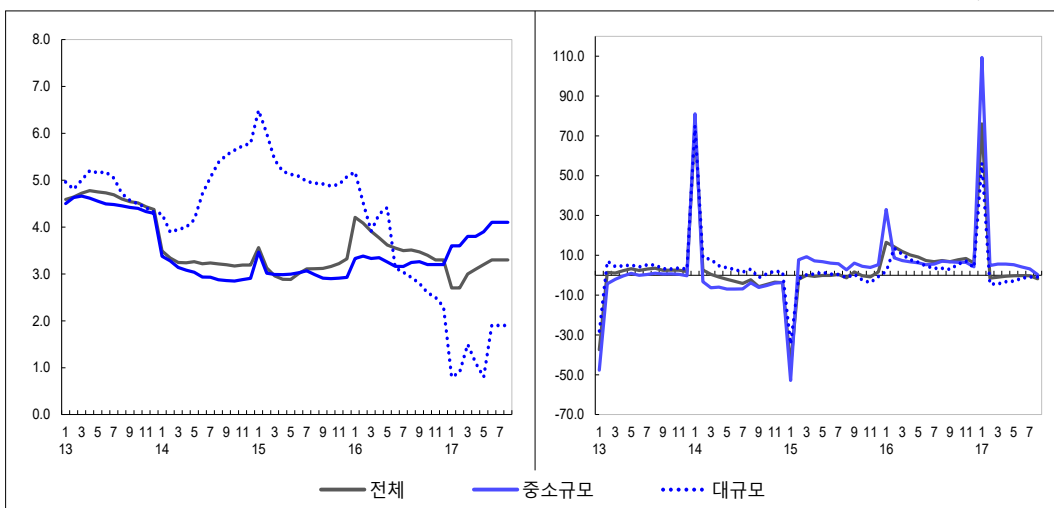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둔화는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증가율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에서 비롯됨.

[그림 3] 1~8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정액급여증가율(좌)과 특별급여증가율(우) 추이 (단위 : %)



주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8월 근로자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산업별 편차가 큼

- 2017년 8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6.9%)이었으며, 다음으로 여가 관련 서비스업(5.2%)으로 평균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함.
 - 반면 운수업(-3.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3.1%), 교육서비스업(-2.4%) 등 부문에서는 마이너스 임금상승률을 보임.
 - 8월 임금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537천 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산업은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았음에도 여전히 낮은 임금수준을 보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1,976천 원)이었음.

◆ 2017년 1~8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1%)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17년 1~8월 평균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7.0% ↑)이었으며, 도매 및 소매업(5.4%), 여가관련서비스업(4.9%) 등 주요 내수산업으로 나타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1%)의 임금이 감소한 가운데 부동산 및 임대업(1.3%),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8%)은 1%대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제조업(2.9%)은 전산업 평균상승률 수준임.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	2016	2017			
			1~8월 평균	8월	1~8월 평균	8월
전 산업	3,300 (3.5)	3,425 (3.8)	3,375 (4.0)	3,334 (4.3)	3,470 (2.8)	3,377 (1.3)
광업	3,676 (5.6)	3,796 (3.3)	3,756 (3.1)	3,592 (3.4)	3,830 (2.0)	3,489 (-2.9)
제조업	3,617 (3.2)	3,755 (3.8)	3,685 (4.1)	3,525 (2.8)	3,792 (2.9)	3,620 (2.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856 (5.4)	6,330 (8.1)	5,894 (7.7)	5,116 (10.9)	5,827 (-1.1)	4,956 (-3.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945 (4.8)	3,118 (5.8)	3,047 (6.2)	3,166 (10.7)	3,144 (3.2)	3,159 (-0.2)
건설업	2,591 (3.8)	2,673 (3.2)	2,656 (3.2)	2,599 (3.9)	2,754 (3.7)	2,646 (1.8)
도매 및 소매업	3,292 (2.7)	3,428 (4.1)	3,368 (5.0)	3,297 (4.9)	3,539 (5.1)	3,401 (3.2)
운수업	2,952 (5.3)	3,102 (5.1)	3,062 (5.9)	3,370 (13.3)	3,179 (3.8)	3,254 (-3.4)
숙박 및 음식점업	1,824 (2.2)	1,881 (3.1)	1,858 (3.8)	1,849 (3.5)	1,989 (7.0)	1,976 (6.9)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4,012 (2.7)	4,146 (3.3)	4,112 (3.8)	3,998 (3.8)	4,224 (2.7)	4,078 (2.0)
금융 및 보험업	5,488 (4.9)	5,712 (4.1)	5,666 (3.8)	5,412 (1.5)	5,825 (2.8)	5,537 (2.3)
부동산 및 임대업	2,478 (6.7)	2,617 (5.6)	2,586 (5.1)	2,572 (5.6)	2,619 (1.3)	2,547 (-1.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561 (3.2)	4,817 (5.6)	4,675 (5.9)	4,995 (6.3)	4,758 (1.8)	4,900 (-1.9)
사업서비스업	2,002 (4.1)	2,077 (3.7)	2,045 (3.6)	2,065 (6.8)	2,077 (1.6)	2,024 (-2.0)
교육서비스업	3,483 (3.2)	3,556 (2.1)	3,623 (2.2)	3,720 (4.3)	3,706 (2.3)	3,631 (-2.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72 (2.7)	2,860 (3.2)	2,820 (3.1)	2,804 (5.8)	2,879 (2.1)	2,840 (1.3)
여가관련 서비스업	2,512 (4.7)	2,618 (4.2)	2,583 (5.9)	2,483 (4.3)	2,709 (4.9)	2,613 (5.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326 (3.4)	2,477 (6.5)	2,422 (6.4)	2,472 (5.4)	2,535 (4.7)	2,595 (4.9)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2.0시간 감소한 171.9시간(월력상 근로일수 20.6일로 전년동월대비 0.1일 감소)

○ 2017년 8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1.9시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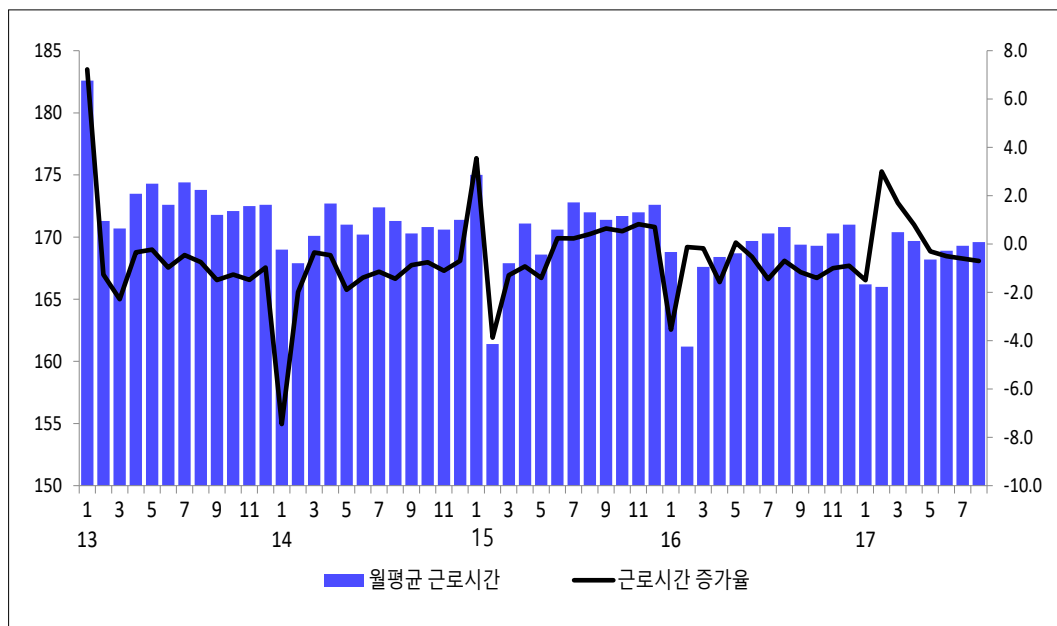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7.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9시간 감소하였고, 임시·일용직 근로시간은 114.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8시간 감소함.

◆ 2017년 1~8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2시간 감소한 169.6시간(월력상 근로일수 20.3일로 전년동월대비 같음)

- 2017년 1~8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5.0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4시간 감소하였고, 비상용근로자는 111.4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2.6시간 감소함.

[그림 4]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증가율(1~8월 평균) 추이

(단위 : 시간, %)



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8월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 평균 근로시간은 모두 감소(사업체 규모별 1~8월 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평균 대비 감소)

- 8월 중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72.7시간(-1.4%), 대규모 사업체는 168.4시간(-0.2%)으로 나타남.

〈표 4〉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5	2016	2017			
				1~8월 평균	8월	1~8월 평균	8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73.2(0.7)	172.0(-0.7)	171.6(-0.5)	175.1(4.7)	170.4(-0.7)	172.7(-1.4)
	상용 총근로시간	179.6(0.7)	178.6(-0.6)	177.9(-0.5)	181.6(5.2)	176.4(-0.8)	179.1(-1.4)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7.4(0.8)	166.1(-0.8)	165.6(-0.6)	169.4(5.5)	164.5(-0.7)	167.5(-1.1)
	상용 초과근로시간	12.2(0.0)	12.4(1.6)	12.3(0.8)	12.2(0.8)	11.9(-3.3)	11.6(-4.9)
	비상용근로시간	117.5(-1.5)	115.7(-1.5)	116.2(-0.5)	120.5(1.2)	112.8(-2.9)	114.1(-5.3)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9.7(0.5)	166.9(-1.6)	167.3(-1.5)	168.8(3.7)	166.4(-0.5)	168.4(-0.2)
	상용 총근로시간	173.7(0.9)	170.8(-1.7)	170.5(-1.5)	170.4(3.7)	169.3(-0.7)	169.8(-0.4)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8.3(1.1)	157.0(-0.8)	156.6(-0.4)	157.9(5.7)	156.9(0.2)	158.0(0.1)
	상용 초과근로시간	15.4(-1.3)	13.7(-11.0)	13.9(-12.0)	12.5(-16.1)	12.4(-10.8)	11.7(-6.4)
	비상용근로시간	86.9(-7.4)	85.5(-1.6)	91.9(-2.6)	121.6(3.3)	97.1(5.7)	124.2(2.1)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8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

- 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145.6시간, 3.5%↓)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72.5시간, -2.5%)과 교육서비스업(158.3시간, -2.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1.6시간, -2.1%) 순으로 평균 근로시간 감소가 컸음.
 -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176.7시간, 0.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66.5시간, 0.5%),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182.0시간, 0.5%)은 평균 근로시간이 증가함.
 - 8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191.2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5.6시간)으로 나타남.
- 1~8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크게 감소한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187.0시간, -1.9%)이며,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179.8시간, 2.0%)임.
 - 1~8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187.0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5.5시간)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5	2016	2017			
			1~8월 평균	8월	1~8월 평균	8월
전 산업	172.6(0.7)	171.0(-0.9)	170.8(-0.7)	173.9(4.6)	169.6(-0.7)	171.9(-1.2)
광업	179.2(-0.1)	179.0(-0.1)	178.2(-0.3)	179.0(4.3)	180.8(1.5)	178.7(-0.2)
제조업	186.3(0.5)	184.5(-1.0)	183.7(-1.0)	181.1(3.0)	182.8(-0.5)	180.7(-0.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0.8(0.2)	167.5(-1.9)	166.6(-2.3)	165.7(1.0)	166.4(-0.1)	166.5(0.5)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77.8(0.0)	177.1(-0.4)	176.3(-0.5)	181.1(4.0)	179.8(2.0)	182.0(0.5)
건설업	147.4(-0.7)	145.7(-1.2)	146.7(-0.3)	150.9(3.3)	145.5(-0.8)	145.6(-3.5)
도매 및 소매업	172.9(0.3)	171.4(-0.9)	171.1(-0.8)	176.8(7.1)	169.9(-0.7)	173.8(-1.7)
운수업	173.9(0.5)	172.3(-0.9)	172.3(-0.6)	176.6(3.2)	170.0(-1.3)	173.9(-1.5)
숙박 및 음식점업	175.3(0.1)	172.3(-1.7)	171.4(-1.7)	175.7(3.2)	171.9(0.3)	176.7(0.6)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4.3(1.5)	163.3(-0.6)	162.9(-0.5)	169.5(7.3)	163.7(0.5)	168.6(-0.5)
금융 및 보험업	164.3(0.6)	162.8(-0.9)	162.7(-0.7)	169.9(8.7)	162.9(0.1)	169.0(-0.5)
부동산 및 임대업	192.8(1.4)	191.2(-0.8)	190.7(-0.6)	193.6(3.9)	187.0(-1.9)	191.2(-1.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4.9(1.0)	163.3(-1.0)	162.9(-0.7)	166.4(5.7)	162.5(-0.2)	165.7(-0.4)
사업서비스업	173.2(0.8)	171.7(-0.9)	170.6(-0.9)	177.0(4.1)	168.2(-1.4)	172.5(-2.5)
교육서비스업	151.5(-0.3)	148.5(-2.0)	149.6(-1.8)	162.3(7.7)	148.3(-0.9)	158.3(-2.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1.5(1.1)	169.7(-1.0)	169.4(-0.9)	175.2(4.7)	167.2(-1.3)	171.6(-2.1)
여가관련 서비스업	160.6(1.1)	159.7(-0.6)	159.7(-0.2)	166.0(4.9)	159.3(-0.3)	165.0(-0.6)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3.7(0.5)	163.6(-0.1)	163.7(0.6)	169.6(5.9)	163.8(0.1)	168.2(-0.8)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10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718건
 - 지난 10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686건)보다 32건 많은 수치임.
- 지난 10월 조정성립률 59.1%
 - 지난 10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57.8%에 비해 1.3% 높아진 수치임.

〈표 1〉 2016년, 2017년 10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7. 10	718	667	358	154	204	248	30	218	11	50	51	59.1
2016. 10	686	652	332	131	201	242	23	219	14	64	34	57.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지난 10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10,939건
 - 지난 10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11,204건)보다 265건 낮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12.9%(1,19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7.1%(8,042건)를 차지함.

〈표 2〉 2016년, 2017년 10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7. 10	10,939	9,233	1,036	155	1,640	608	3,262	2,532	1,706
2016. 10	11,204	9,532	1,210	190	1,663	650	3,594	2,225	1,67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양대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민주노총, 2017 전국노동자대회 개최(11월 12일, 서울 시청 광장)
 - 민주노총에 따르면, 당일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 5만여 명이 참석함.
 -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촛불항쟁 결과로 조기대선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고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무엇이 바뀌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면 예외 없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가 기준이고 원칙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등 지금 당장 정부 정책과 의지로 가능한 노동적폐 청산 5대 요구에 정부는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 한국노총, 2017 전국노동자대회 개최(11월 18일, 서울역 광장)
 - 한국노총에 따르면, 당일, 조합원과 가족 등 1만여 명이 참석함.
 - 김주영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친화적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사회적 대화의 복원을 재차 강조함.
 - 참석자들은 ▲ 온전한 노동 3권 쟁취 ▲ 적정한 노동조건과 생명이 보장되는 일자리 확보 ▲ 비정규직 철폐 ▲ 노동시간 단축과 노조전임자 노사자율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함.

◆ 민주노총, 제9기 임원 선거 후보자 확정

- 민주노총은 11월 6일, 제9기 임원을 뽑는 직접 선거에 4개 조가 후보등록을 마쳤다고 밝힘.
 - 직선제로 선출되는 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이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출마하며, 이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함.
 -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도입은 2007년 4월 제40차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바 있음. 이후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유예되다가 2014년 처음으로 실시됨. 1기 임원직선제에는 정용건(사무금융노조), 한상균(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허영구(공공운수연맹), 전재환(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지회) 후보가 출마했으며, 금속노조 출신인 한상균·전재환 후보가 결선에 올랐고, 한상균 위원장이 선출된 바 있음. 2014년 첫 번째 직선제 선거 당시 선거인수는 약 67만 명이었고, 그중 42만 명(63%)이 투표에 참여함.
 - 이번 위원장 후보는 기호 순번에 따라 김명환(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철도노조), 이호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조), 윤해모(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상수(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철도노조) 등 4명임. 2기 직선제에 공공운수노

- 조 출신 위원장 후보가 다수 출마한 것은 지난 1기 직선제와 비교되는 점임.
- 1차 투표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됨.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2차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임.

〈표 3〉 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 후보 비교

	김명환	이호동	윤해모	조상수
사회적 대화	긍정	긍정	긍정	긍정
사회적 대화 형식	신8자 회의 제안 (노사정위원장이 아닌 국 회대표자, 노사 대표 4명, 정부 대표 2명, 대통령)	노정교섭 등 다른 형태 의 사회적 대화 기구 제안	노사정위원회 참여	노정교섭 등 다른 형태 의 사회적 대화 기구 제안
정치세력화	진보정당 통합 재추진	구체적 언급 없음	구체적 언급 없음	기존 정치세력화 비판. 새로운 사회세력화 추진
노조할 권리 관련 기조	노동기본권 혁명 : 노동 기본권 전면 보장	실질적 총파업을 조직할 수 있는 역량 강조	노동3권 강화	노조하기 좋은 나라
사회연대 공약 기조	연대 투쟁 노선 강조	노동자-민중연대 강화	사회연대 강화	연대노총
사회연대 실천 방안	민중전선체 구축, 민족통 일 운동 복원, 시민사회 운동과 연대 강화, 민주 민중연대전선 확대강화	노동사회단체-민중단체 들 주축 상설공동투쟁체 추진, 노동자-대학생 연 대 강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 업-중소기업 노동자 연 대를 위한 사회연대 임 금정책 제안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하후상박 임금 인 상 연대 강조

◆ 보건의료노조 동향

- 대전 을지대병원지부, 서울 을지병원지부 공동 파업 지속
 -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대전)와 을지대학교을지병원지부(서울)가 지난 10월 10일 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함.
 - 파업의 주요 원인은 저임금, 부실한 직원 처우 등임.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현재 을지병 원에서 20년간 근무한 간호사 임금은 다른 사립대병원 간호사 초임과 비슷한 수준으로, 타 사립대병원 같은 직급 간호사의 60% 수준에 불과함. 노조는 향후 병원 내 인권유린, 갑질 문화, 열악한 근무환경, 노동법 위반, 의료법 위반, 부정행위 등 비정상을 정상화하 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 노조는 사회공론화, 특별근로감독 요청, 법률 자문, 진정·고소·고발, 지역시민들과 함 께하는 비정상 정상화운동 등 향후 투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파업

-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10월 말부터 파업 지속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0월 말부터 ‘노조 활동 보장’과 ‘총고용 보장’, ‘업체 폐업시 고용·노동조건·근속의 3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음.
 - 사측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하청업체에 2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대체인력을 투입함.
 - 11월 15일에는 창원공장에 용역경비 30명이 배치됨.
 -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손배·가압류와 용역경비 투입은 지난 정권에서 행해진 가장 전형적인 노조파괴 적폐”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함.

◆ 유성기업, 파업참가자 상대 손배 재소송

-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조합원 36명에게 4천642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 유성기업 파업은 지난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 월급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된 후 장기간 지속되어 옴.
 - 회사는 지회의 2014년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사측은 2011년 파업에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40억 원의 손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지회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는 쟁의 참가 조합원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적시돼 있다”며 “이번 손배 소송은 여전히 유성기업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이제 와서 2014년 쟁의행위에 손배를 청구한 것은 명백히 소송을 통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함.

◆ LG유플러스, 간접고용 관련 갈등 심화

- 대규모 협력업체 교체 예고
 - LG유플러스가 IPTV·초고속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들과 계약을 집단 해지하고, 근무지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
 - 임금·단체교섭에서 사측인 협력사협의회를 대리하고 있는 경총은 지난 17일 지부와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운영업체에 업체 교체와 권역조정 계획을 통보함. 현재 LG유플러스는 전국 72센터를 52개 하청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 노동계는 LG유플러스가 간접고용 문제를 방지할 경우 사업운영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함.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방송·통신사업 재승인 심사에 ‘일자리’ 부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된 상태임. 노조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사용자 책임을 방기하고 외주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향후 정부의 유선방송 사업 재허가 심사에서 일자리 항목 0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노동계는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 KT와 SK는 2015년과 올해 각각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음.

◆ 특수고용직 단결권 우선 보장 추진

○ 더불어민주당, 특수고용 노동자 단결권을 우선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15일 원내대표와 양대 노총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범용적인 단결권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관련 쟁점은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할지, 특별법을 제정할지, 노동 3권 전부를 보장할지, 어느 직종까지 적용할지 등임.
-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사용종속성 정도와 무관하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 이라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무조건 부여하자는 것임.
- 한정애 의원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례마다 노동자성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며 “기본적이고 범용적인 단결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도 가능하다”고 언급함.

◆ 고용노동부,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발표

○ 새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온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발표

- 그동안 콜센터 현장실습 고등학생의 자살, 인터넷 방문수리기사의 살인사건 등 감정노동 종사자의 폭언·폭력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고용부 관계자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법안 도입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핸드북’을 보급하여 사업주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핸드북’에는 감정노동의 개념 및 관리 필요성,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사항, 기업별 우수사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고객에 의한 폭력 등 발생 시 노동자에게 업무중단권 부여, 피해 노동자에게 심리상담·치료기회 제공, 민·형사상 조

- 치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 등 대응조치,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구비, 스트레스 유발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문구게시, 과도한 업무 모니터링 자제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이 포함됨.
- 고용부는 핸드북 보급을 위해 11월 중 정부·공공기관 및 감정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근로감독관 및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문 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고용부 및 관련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힘.

◆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합동 발표

○ 직장 내 성희롱 지도 감독 강화

- 고용부는 사업장 점검 시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고용부는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집중 홍보할 계획임.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됨. 아울러,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 여성가족부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적극 확산할 계획이며, 인사담당자들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 미투(“#ME, TOO”) 캠페인, 스피크아웃(“SPEAK OUT”) 행사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힘. **KLI**

(송민수, 동향분석실 전문위원)